

할부금융 약관 [신차, 중고차, 산업재, 내구재] 신규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4조 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</p> <p>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동의를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(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)로 보낼 수 있습니다.</p>	<p>제4조 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</p> <p>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동의를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)로 보낼 수 있습니다.</p>
<p>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<u>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</u> <u>준에 따라</u>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,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.</p> <p>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<u>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</u>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,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<u>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</u>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
<p>제8조 (기한이익의 상실)</p> <p>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,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<u>채무자는</u>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,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<u>채무자는</u>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제8조 (기한이익의 상실)</p> <p>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,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<u>채무자는</u>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<u>(삭제)</u>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,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<u>채무자</u>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<u>(삭제)</u>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

<신설>

제9조 (금리인하 요구권)

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, 서면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(개인사업자 포함) :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, 그 보관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)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, 서면, 휴대폰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
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

2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

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,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, 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.

제9조 (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)

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 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
<중도상환수수료율>

- 국산신차 2%, 수입신차2%,산업재2%,내구재2%
- 중고차 금리12%이하 2%,금리18%이하 1.5%, 금리 18% 초과 1.0%

제10조 (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)

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
(예시삭제)

제11조 (비용의 부담)
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
제12조 (비용의 부담)
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